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(4년) 운영 규정

[시행 2025.1.10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73호, 2025.1.10, 일부개정]

전남대학교 062-530-1023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(4년)(이하 "학부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**(교육목표) 학부는 학생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학문 횡단형 교육을 실시하여 학문 영역 간 전이능력과 통섭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, 비판적 사고 능력,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.
- 제3조(조직 등) ① 학부에 학부 업무를 총괄하는 학부장을 둔다.
 - ② 학부장은 전남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.)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③ 학부의 학사관리 및 분담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책임지도교수를 두며,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④ 학부의 행정지원 및 학사관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 - ⑤ 삭제 < 2025. 1. 10.>
- **제4조**(교과 및 전공이수) ① 학부 학생의 주전공 이수는 자기설계전공으로 교과를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 - ② 학생은 학부의 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**제5조**(전공변경) ① 학부 학생은 이 대학교 학칙 제47조(모집단위간 이동)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② 학부 학생이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미 이수한 학부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중 일부를 이 대학교 교학규정에 의한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 - ③ 학부 학생이 모집단위간 이동 등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학부 학생에게 부여하는 각종 수혜 자격은 상실된다.

제6조(교과편성) (삭제)

제7조(졸업자격인정) 학부의 졸업자격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졸업학점) (삭제)

제9조(전공표시) 학생이 자기설계전공,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 학칙 제59조에 의한다.

제10조(책임지도교수) 책임지도교수배정은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일반트랙) ① 삭제 <2025. 1. 10.>

- ② 삭제<2025. 1. 10.>
- ③ 삭제<2025. 1. 10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, 교학규정 등 학사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부칙 <제2073호,2025.1.1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제2조(경과조치)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